

第 18 回 臨時會

2005. 9. 5(月)

檢 討 報 告 書

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(안)

鷄 龍 市 議 會

專門委員 金 泳 鎮

-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(안) -

檢 討 報 告

□ 制定背景

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(법률 제7188호, 2004. 3. 11공포, 2004. 6. 1시행)의 제정·시행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)의 규정에 의한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

□ 主要内容

-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·운영 및 상황관리와 자연재난대책기간을 6.15 ~ 10.15 ⇒ 5.15 ~ 10.15로 강화(안 제1조, 제2조).
- 재난대비체제를 현행 3단계(준비→경계→비상)에서 2단계로 축소. 운영기간, 구성 및 임무, 위임전결사항을 정함(안 제3조 내지 제7조).
- 재난발생시 긴급구조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총괄지휘하고 상황관리 및 현장상황운영, 지원팀의 구성·임무, 인력, 장비, 자원동원 등 협조체제를 정함(안 제12조 내지 제23조).

□ 檢討意見

- 본 제정 조례안은,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·시행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)의 규정에 의한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,
-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, 시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